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 - 232호

신촌지역(마포)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80호(2021.2.15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-163호(2021.9.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“신촌지역(마포)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명 칭 : 신촌지역(마포)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-29번지 일대
- 면 적 : 1,427.5㎡(대지면적: 1,270.3㎡, 정비기반시설: 157.2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(주)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, 5층(신사동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1년 12월 2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 (지하/지상)	주용도	비고
1,270.3	754.63	59.41	15,550.64	765.79	지하7층/ 지상18층	주거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구 모	관리처분 대상자별 내역			
		토지등소유자 (환지시설)	일반분양 (장기임대)	보류시설	비 고
공동주택	계	2	96	-	(단위: 세대)
	40㎡ 이하	-	17	-	
	40~50㎡	-	6	-	
	50~60㎡	1	59	-	
	60㎡ 초과	1	14	-	
근린생활시설	1,581.65㎡	1,581.65㎡	-	-	

다. 신설 또는 용도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·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

종류	명칭	규모(㎡)	설치비용(천원)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로	중로3-1 소로1-2	157.2	15,172	사업시행자 설치 후 마포구청 무상귀속
계		157.2	15,172	

·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: 철거완료(2021.7.21.)